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코리아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은 협회 (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 (www.goldman-sachs.co.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4. 작성기준일 : 2013 년 2 월 8 일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 년 2 월 8 일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수익증권 10 조좌
[모집(매출) 총액]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 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goldman-sachs.co.kr) 참조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입금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2. 모집 예정 기간	1
3. 모집 예정 금액	1
4.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1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6. 집합투자업자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1. 주요 투자대상	3
가. 당해 자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3
나.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3
2.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4
가. 투자 목적	4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5
3. 수익구조	5
4. 주요 투자위험	5
가. 일반 위험	5
나. 특수위험	6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6. 운용전문인력	7
당해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7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8
매입·환매관련 정보	10
1. 수수료 및 보수	10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0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2
2. 과세	18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18
나. 수익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	18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9
가. 기준가격 산정	19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9
요약 재무정보	20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투자신탁 코드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87056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A	87484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1	87485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2	96108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3	96109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4	96111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5	96112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I	87486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E	87487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N	87488

주1) 종류 C4, C5는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모집 예정 기간

모집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 예정 금액

수익증권 10조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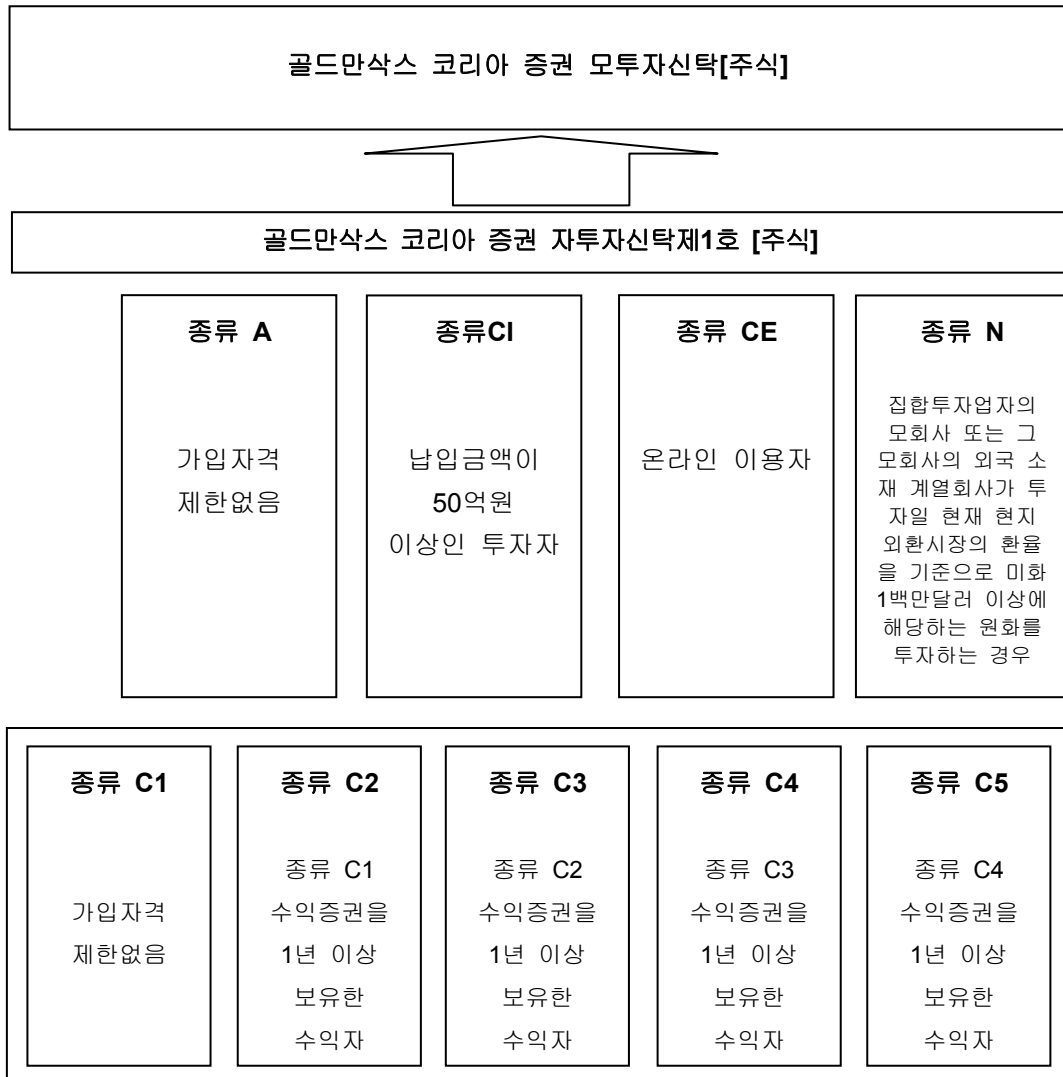
4.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개시 이후 당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일정한 규모 이하가 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 (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

* 모자형 구조



6. 집합투자업자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가. 당해 자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권	90% 이상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임. 아래 “나. 투자제한” 참고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 위 투자대상은 본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만을 **발취**한 것이며,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제8항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7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채무증권	3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3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자산총액의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주식연계채권”에 한함)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함) 및 파생결합증권(주식연계채권에 한함) 투자의 목적 : 헤지 목적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주식 및 채무증권, 통화와 관련되고 선도환거래를 포함하며 제6호에 상응하는 장외파생상품 및 금리스왑거래, 토탈리턴스왑 투자의 목적 : 헤지 목적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자 및 발행자의 신용등급 : A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임.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 위 투자대상은 본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만을 **발체**한 것이며,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제8항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가. 투자 목적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 투자하여 장기 자본상승 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투자 위험을 부담하며, 주식은 개별 회사의 활동 및 일반 시장 및 경제 조건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상승 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투자신탁은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Index(총수익 기준)

주) 비교지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변경 상황 등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제9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 상승 달성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을 말합니다.

(2) 위험관리

다양한 개별종목이 편입됨에 따라 개별종목 리스크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사전목표 대비 실제 운용시 나타나는 초과수익, tracking error등이 목표대비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합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손익은 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결정되나, 환율변동, 국내외의 과세 규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아래 위험들은 요약 설명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위험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자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개별 회사들의 활동 및 일반시장 및 경제조건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는 주식투자 관련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수익자들은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기초하여 발행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그 순위가 동 발행회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발행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포함)의 변제보다 후순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다고 하여,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 모델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외에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중 위험	본건 모두투자신탁의 특정 국가에의 투자 집중은 본건 모두투자신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건으로부터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수익자들에게 추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위험은 (i) 해당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및/또는 (ii)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인 비유동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헷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헷지 파생상품의 가치와 그것이 헷지하는 유가증권 또는 포지션의 가치가 충분히 서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 본건 모두투자신탁에 대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위험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2부 제10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아래 **위험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투자위험을 가진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채권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6. 운용전문인력

당해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2012.08.31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오선희	52세	상무	[0]	[0]	ANZ은행 1983.3.~1990.12. 신용분석 동양증권 1991.3.~1996.9. 리서치 Nomura Asset. 1996.10.~1999.8. 주식운용 Alliance Capital 1999.9.~2002.4. 주식운용 Standard Life Investment 2002.5.~2007.5. 주식운용 골드만삭스증권 2007.6.~2007.10. 리서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2007.11.~현재 주식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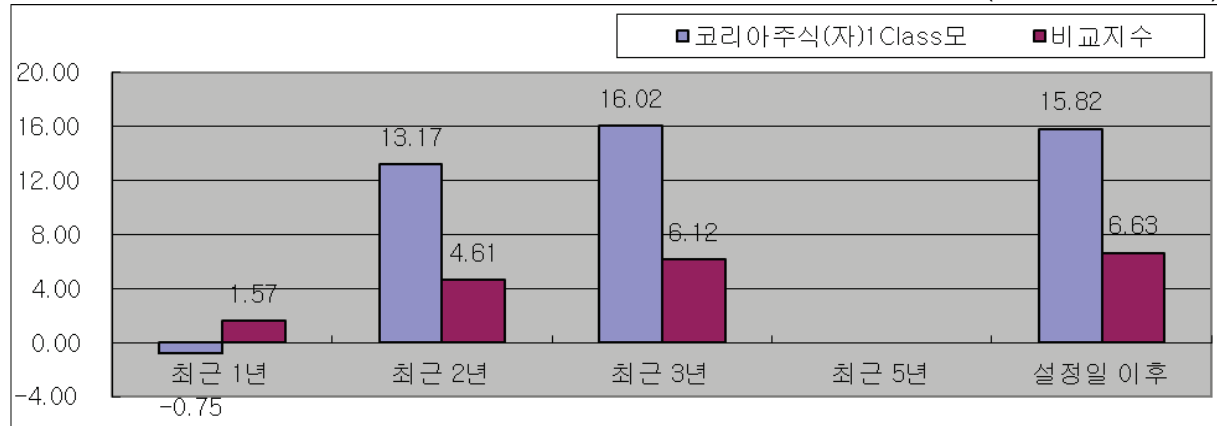
주 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 2)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 기준)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9.01 ~12.08.31	10.09.01 ~12.08.31	09.09.01 ~12.08.31		08.09.01 ~12.08.31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모)	-0.75	13.17	16.02		15.82
비교지수	1.57	4.61	6.12		6.63
종류 A	-2.43	11.34	14.10		13.95
비교지수	1.57	4.61	6.12		6.63
종류 C1	-2.96	10.64	13.40		13.15
비교지수	1.57	4.61	6.12		6.63
종류 C2	-2.89				2.69
비교지수	1.57				0.36
종류 C4	-2.66				-2.66
비교지수	1.54				1.54
종류 CI	-1.74				4.00
비교지수	1.57				0.38
종류 CE	-2.62	11.00	13.77		13.92
비교지수	1.57	4.61	6.12		7.83

주 1) 비교지수 : $(0.95 * [KOSPI]) + (0.05 * [MMI(CD)지수])$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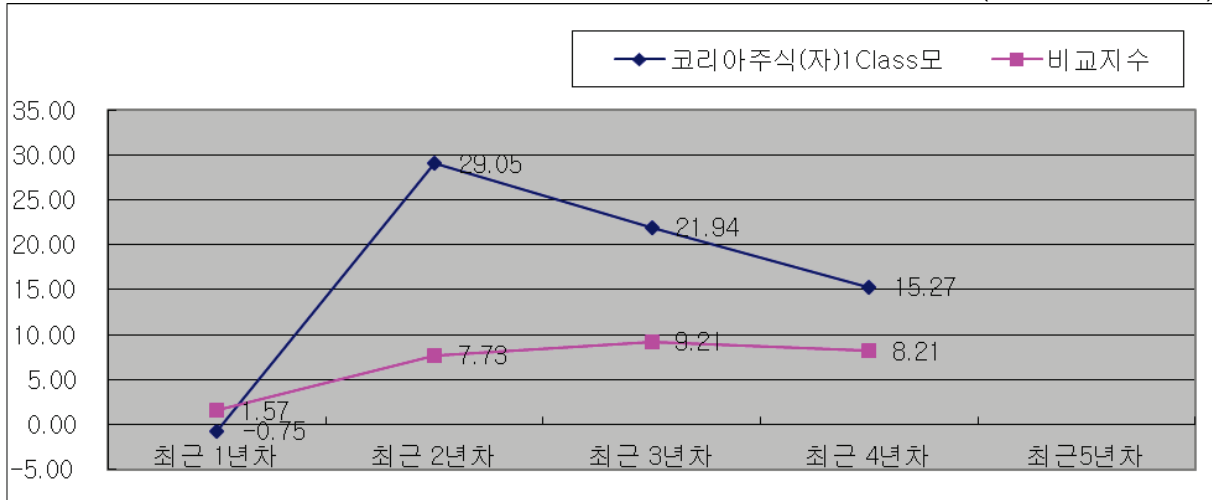
주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종류 C3, C5, N은 현재 설정이 되지 않아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9.01 ~12.08.31	10.09.01 ~11.08.31	09.09.01 ~10.08.31	08.09.01 ~09.08.31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모)	-0.75	29.05	21.94	15.27	
비교지수	1.57	7.73	9.21	8.21	
종류A	-2.43	27.06	19.82	13.54	
비교지수	1.57	7.73	9.21	8.21	
종류C1	-2.96	26.15	19.12	12.42	
비교지수	1.57	7.73	9.21	8.21	
종류C2	-2.89	8.23			
비교지수	1.57	-0.89			
종류C4	-2.66				
비교지수	1.54				
종류C5	-1.74	9.03			
비교지수	1.57	-0.89			
종류CE	-2.62	26.53	19.52	14.35	
비교지수	1.57	7.73	9.21	13.10	

- 주 1) 비교지수 : (0.95 * [KOSPI]) + (0.05 * [MMI(CD)지수])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8) 종류 C4, C5는 현재 설정이 되지 않아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하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1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E	온라인 이용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N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외국 소재 계열회사로 제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1) "이익금"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2) 모투자신탁

(신한아이타스 제공)

구분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기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0%	해당없음	당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지급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0%	해당없음	

주 1) "이익금"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당해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954	-
		증권 거래비용	0.3891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1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2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953	-
		증권 거래비용	0.3942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1922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947	-
		증권 거래비용	0.4084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090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950	-
		증권 거래비용	0.7640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908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940	-
		증권 거래비용	0.3750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 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90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1.7952	-
		증권 거래비용	0.4494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I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 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9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0.9955	-
		증권 거래비용	0.391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E	온라인 이용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 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1.9955	-
		증권 거래비용	0.3876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N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외국 소재 계열회사로 제한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1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892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8969	-
		증권 거래비용	0.7547	사유 발생시

- 주 1) 종류 C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2000%
나.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1000%
다.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0000%
- 주 2) 종류 CE 수익증권의 총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산정됩니다.
가.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9925%
나.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8925%
다.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7925%
- 주 3) 종류 CE 수익증권의 합성 총보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산정됩니다.
가.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9955%나.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9955%
다.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7955%
- 주 4)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
- 주 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6)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7)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종류 CE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주 1), 주 2)에서와 같이 기간별 해당 판매보수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주 8)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종류 CE 수익증권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주1), 주 3)에서와 같이 기간별 해당 판매보수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주 9) 종류 C4, C5, N은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유사한 유형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모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신한아이타스 제공)

구 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0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00	
기타비용	0.003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0030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0030	
증권 거래비용	0.3854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1,000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82	659	1,061	2,18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82	660	1,063	2,185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35	724	1,239	2,65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5	725	1,240	2,654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25	693	1,187	2,547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5	694	1,188	2,549
종류 C3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14	661	1,134	2,440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5	663	1,137	2,445
종류 C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04	630	1,082	2,33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4	631	1,084	2,338
종류 C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83	568	977	2,119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4	570	980	2,125
종류 CI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02	318	551	1,220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2	318	552	1,224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94	632	1,050	2,18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4	632	1,051	2,189
종류 N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82	659	1,061	2,18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82	660	1,063	2,185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료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과 종류 A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종류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C3, C5, N은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유사한 유형의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 4) 종류 CE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매1년 단위로 인하는 판매회사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과세

아래 과세에 관한 내용은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으로부터 당해 투자신탁이 받은 분배금은 당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환매 또는 분배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세 외에 모투자신탁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모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모투자신탁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나. 수익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

수익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날에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과세 대상 및 과세 효과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수익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해당 수익자의 다른 종합소득(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최고 35% 세율에 지방소득세 3.5% 추가)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채권 등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비상장주식 및 채권 등 매매·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법 제 238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종류 간 보수 및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영업소 및 집합투자업자 (www.goldman-sachs.co.kr)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경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 환매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초일산입,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초일산입,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2영업일(초일산입,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3영업일(초일산입,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2.08.31)	(2011.08.31)	(2010.08.31)
운용자산	69,438,500,801	63,085,853,871	20,634,355,918
증권	69,438,500,801	63,085,853,871	20,634,355,918
파생상품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8,787,260	30,107,804	601,346
자산총계	69,487,288,061	63,115,961,675	20,634,957,26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96,173,362	10,769,787,956	3,580,294,183
부채총계	296,173,362	10,769,787,956	3,580,294,183
원본	70,710,194,571	52,346,173,719	17,054,663,081
이익잉여금	-1,519,079,872	0	0
자본총계	69,191,114,699	52,346,173,719	17,054,663,081

(단위 : 원)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1.09.01 - 2012.08.31)	(2010.09.01 - 2011.08.31)	(2009.09.01 - 2010.08.31)
운용수익	-1,634,709,224	6,712,900,203	3,599,750,80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634,709,224	6,712,900,203	3,599,750,800
기타수익	23,748,346	19,404,210	2,859,150
운용비용	956,454,273	508,188,667	184,382,449
관련회사 보수	956,454,273	508,188,667	184,382,44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234,980	2,689,660	446,760
당기순이익	-2,569,650,131	6,221,426,086	3,417,780,74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